

<Zusammenfassung>

Gefährdungshaftung im privaten Umwelthaftungsrecht

Lee, Seng Woo

Die Gefährdungshaftung knüpft an eine besondere Gefahrenlage an, die auch bei pflichtgemäßem Verhalten nicht voll beherrschbar ist. Sie setzt weder Rechtswidrigkeit noch Verschulden voraus. Die Einführung von Gefährdungshaftungstatbeständen ist ein Mittel zur Schaffung von Risikoakzeptanz, dem vor allem im Bereich des privaten Umwelthaftungsrechts eine besondere Bedeutung zukommt.

Nach dem Reaktorunglück bestand überwiegend Einigkeit, dass durch eine Verschärfung der Haftung für Umweltschäden Anreize zur Vermeidung von Umweltschäden geschaffen werden sollten. Das Umwelthaftungsgesetz normiert eine verschuldensunabhängige Gefährdungshaftung für die Inhaber bestimmter umweltgefährdender Anlagen. Das Umwelthaftungsgesetz findet allerdings keine Anwendung auf Schadensfälle aus nuklearen Ereignissen, soweit das Atomgesetz und die Übereinkommen Anwendung finden und auf Schäden, die vor dem Inkrafttreten des Umwelthaftungsgesetzes am 10. 12. 1990 entstanden sind. Soweit ein Schaden durch langandauernde Einwirkungen nach und nach entstanden ist, soll die Gefährdungshaftung nur für den Schadensteil eintreten, der nach dem Inkrafttreten des Gesetzes hinzugekommen ist. Nach dem Umwelthaftungsgesetz lassen die Vorschriften eine Haftung auf Grund anderer Vorschriften unberührt. Das Umwelthaftung tritt damit neben andere umwelthaftungsrechtliche Vorschriften.

주 제 어 : 위험책임, 환경작용, 법익침해, 인과관계, 면책, 초자연력

Keywords : Gefährdungshaftung, Umwelteinwirkung, Rechtsgutsverletzung, Kausalität, Haftungsausschluss, Höhere Gewalt

참고문헌

- Deutsch, Erwin: Haftungsrecht I, 1976.
- Gerlitz, Bettina: Umwelthaftung und Unternehmerfreiheit, Frankfurt/M. 2002.
- Gieseke/Wiedemann/Czychowski, WHG, 6. Aufl., Mnchen 1992.
- Ktz, Hein/Wagner, Gerhard: Deliktsrecht, 9. Auflage, 2001.
- Mataja, Viktor: Das Recht des Schadensersatzes vom Standpunkt der Nationalökonomie, 1988.
- Salje, Peter: Umwelthaftungsgesetz, Mnchen, 1993.
- Schfer, Hans-Bernd/Ott, Claus: Lehrbuch des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 Auflage, 1995.
- Schmidt-Salzer, Joachim: Umwelthaftungsrecht, Heidelberg, 1992.
- Julius von Staudinger-Jrgen Kohler: Umwelthaftungsrecht, 13. Bearbeitung, Berlin: Sellier de Gruyter, 1996.
- v. Caemmerer, Ernst: Reform der Gefhrdungshaftung, Gesammelte Schriften, Band III, 1983.
- Wolf, Joachim: Umweltrecht, Mnchen 2002.

임유형 중의 하나로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위험물 관리자에게 절대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독일환경책임법은 특정한 환경위험시설의 소유자에게 오염에 대한 유책성을 배제한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에 따르면 손해유발시설에 의한 환경작용을 통한 법익침해가 성립요건이다. 그러나 규정에 책임근거적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오염물질의 제조업자는 물건을 생산만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독일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면책된다. 그러므로 단지 오염물질이 방출되었다면 독일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규정상 제시된 하천의 변화가 고의로 목적지향적으로 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단지 객관적으로 적합한 행위로 충분한 것인지 논쟁이 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목적이 정해지고 하천으로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우연한 손해발생 사건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4. 기타 위험책임성립요건

위에서 언급한 법규 이외에 독일도로교통법(StVG: Straßenverkehrsgesetz) 제7조¹³⁷⁾, 독일항공기운항법(LuftVG: Luftverkehrsgesetz) 제33조¹³⁸⁾, 독일책임배상법(HaftpflichtG) 제1조¹³⁹⁾, 상법(HGB) 제485조¹⁴⁰⁾의 규정들이 환경법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VI. 맺음말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시 완전하게 지배할 수 없는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 하에서 위법성과 유책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환경사법상의 위험책임은 환경보호를 위한 책

137) 독일도로교통법 제7조(자동차소유자의 책임) 제1항 자동차나 견인되는 차량의 운전시 인간이 사망하거나 신체와 건강이 침해되고 물건이 훼손되면 자동차소유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2항 배상 의무는 사고가 초자연력에 의해 발생되면 면책된다. 제3항 자동차소유자의 의사와 인지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이용하면 그는 소유자 대신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자동차소유자는 그의 과실로 자동차이용을 허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문은 이용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운전에 고용되거나 자동차가 운전자로부터 양도되었을 때 준용되지 않는다. 제1문과 제2문은 견인되는 차량의 이용에 준용된다.

138) 독일항공기운항법 제33조(비행기소유자의 배상 의무) 제1항 항공기운항시 사고로 인간을 사망시키거나 신체와 건강을 침해하게 하고 물건을 훼손시키면 항공기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승객에 대한 계약에 따른 책임 및 군용기소유자의 책임에 제44조부터 제54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자는 훈련하는 자에게 일반법규에 의해 귀책된다.

139) 독일책임배상법 제1조 제1항 열차나 전동차의 운행으로 인간이 사망하거나 신체와 건강이 피해를 입고 물건이 훼손되면 운영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2항 배상 의무는 교통사고가 초자연력에 의해서 발생하면 면책된다. (생략)

140) 독일상법 제485조 선주는 승무원이나 고용인이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문에 의해 책임범위는 8500만 유로까지 제한되어 있다. 특별한 유전자기술시설 운영자를 위한 조치는 독일 유전자기술법 제36조¹³¹⁾에 규정되어 있다.

3. 책임배상법

독일 책임배상법(Haftpflichtgesetz: HaftpflichtG)¹³²⁾ 제2조 제1항 제1문¹³³⁾에 무과실시설책임(verschuldensunabhängige Anlagenhaftung)이 규정되어 있다.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혹은 에너지 및 각종 관련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가스, 증기, 유체물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인간이 사망하거나 인간의 신체와 건강이 피해를 입거나 물건이 훼손되면 시설의 소유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전관, 가스관, 송유관 유조선, 유조차의 효과도 포함된다.¹³⁴⁾ 독일책임배상법 제2조 제1항 제2문¹³⁵⁾은 상태책임(Zustandshaftung)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가 전기나 가스 등에 의한 효과로부터 발생하지 않고 배전시설과 상하수도시설 혹은 에너지, 원료공급시설에 의해 발생한다면 독일 책임배상법 제2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시설의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운영의 기술 역학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¹³⁶⁾

할 책임이 있다. 손해사건으로 인해 지급해야 될 다수의 손해가 제1문에 제시된 최고액을 초과한다면 개별적인 손해는 총액이 최고액에 이르게 감경된다.

131) 독일유전자기술법 제36조(보상조치) 제1항 연방정부는 상원의 동의로 안전단계 2에서 4까지의 유전자기술작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유전자기술을 운영하는 자가 이행해야 될 규정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132) BGBl 1978 I, S. 145. 197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33) 독일배상법 제2조 제2항 제1문 전기, 가스, 증기와 송전시설, 상수도시설 혹은 에너지와 재료의 공급시설의 유출물에 의해 인간이 사망하거나 신체와 건강이 피해를 입고 물건이 훼손되면 시설소유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34) Filthaut, NJW 1983, 2687 ff.; Oehmen, a. a. O., Rn. 337.

135) 독일배상법 제2조 제2항 제2문 손해는 전기, 가스, 증기 액체의 효과에 의하지 않고 그러한 시설에 기인하고, 시설이 손해발생시 규정에 따른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시설은 기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것이 된다.

136) 예를 들어 강한 태풍으로 인한 전신주의 부러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2. 유전자기술법

독일유전자기술법(Gentechnikgesetz: GenTG)¹²⁴⁾ 제32조 제1항¹²⁵⁾에 의해 운영자는 유전자기술작업에 따라 생물체(Organismus)의 성질로 인해 소실 또는 신체와 건강이 피해를 입거나 물건이 훼손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유전자기술에 따라 변화된 생물체의 성질에 의한 손해의 원인(Schadensverursachung)만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 유전자기술에 의해 변화된 생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되면 동법 제34조 제1항¹²⁶⁾에 의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그 손해가 유전자기술작업으로 인한 생물체의 성질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추정된다. 운영자는 손해가 확률적으로 이 생물체의 다른 성질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면 동법 제34조 제2항¹²⁷⁾에 의해 추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독일민법 제249조 이하와 유전자기술법 제32조 제3항¹²⁸⁾, 제7항¹²⁹⁾에 의한다. 독일유전자기술법 제33조¹³⁰⁾

123) 제27조(피해자의 공동과실)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독일민법 제254조가 적용되고, 물건의 훼손의 경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124) BGBl 1993 I, S. 2066. 1993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25) 유전자기술법 제32조(책임) 제1항 유전자기술작업에 기초가 되는 생물체의 성질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건강이 침해되고 물건이 훼손되면 운영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126) 독일유전자기술법 제34조(원인추정) 제1항 손해가 유전인자에 의해서 변경된 생물체에 의해서 야기되면 그 손해는 유전인자 기술작업으로 된 생물체의 성질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127) 독일유전자기술법 제34조(원인추정) 제2항 손해가 이 생물체의 다른 성질로 인한 것이라면 추정되지 않는다.

128) 독일유전자기술법 제32조(책임) 제3항 손해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254조에 의하고, 물건피해의 경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등하게 본다. 운영자의 책임은 손해가 동시에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면 감경되지 않고 제2항 제2문이 준용된다.

129) 독일유전자기술법 제32조(책임) 제7항 물건의 손해가 자연과 경관의 피해를 일으킨다면 피해자가 침해를 입지 않고 존재하였을 상태를 이루는 한에서 원상회복비용이 물건의 가치를 현저하게 초과함으로써 인해 부적절하지 않게 민법 제251조 제2항을 그 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다. 필요비는 배상권자의 청구로 지급한다.

130) 독일유전자기술법 제33조(책임최고액) 유전자기술작업에 관련된 생물체의 성질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운영자는 제32조의 사례에서 피해자에게 1억 6천 마르크 까지 배상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배상할 수 있다.¹¹⁶⁾ 손해의 존재와 손해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환경조사(Untersuchungsmaßnahme)는 유효하다.¹¹⁷⁾

V. 기타 관련법상 위험책임

1. 원자력법

손해가 핵시설로부터 유출되는 핵연료에 의해서 발생할 때 핵시설 소유자는 파리의 원자력책임협약(Pariser Atomhaftungsübereinkommen)과 관련된 독일원자력법(Atomgesetz) 제25조¹¹⁸⁾에 의해서 귀책된다.¹¹⁹⁾ 원자력선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브뤼셀의 원자력선협약(Brüsseler Reaktorschiffabkommen)과 관련된 독일원자력법 제25 a조¹²⁰⁾에 의해서 책임이 정해진다.¹²¹⁾ 독일원자력법 제26조¹²²⁾는 방사능피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독일원자력법 제27조¹²³⁾ 이하와 독일민법 제249조에 의한다.

116) BGHZ 80. 2, 6.

117) BGHZ 103, 129.

118) 독일원자력법 제25조(핵시설책임) 제1항 손해가 핵시설로 인해 발생하면 핵시설소유자 책임에 파리협약의 규정과 공동조안과 더불어 이 규정이 적용된다. 파리협약은 협약의 시행으로 인해 그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제법상의 구속력과 무관하게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적용될 수 있다.

119) BGBI 1985 I, S. 1565; BGBI 1985 II, S. 964. 이 법은 198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20) 독일원자력법 제25 a조(원자력선책임) 제1항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원자력선 소유자의 책임에 준용된다.

121) BGHZ 1975 II, S. 977.

122) 독일원자력법 제26조(다른 사례의 책임) 제1항 방사능의 유출, 핵분리 과정의 효력과 방사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로 인해 동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제시된 사례와 관련해서 인간이 사망하거나 신체나 건강이 침해되고 물건이 훼손되면 핵분리원료와 방사능원료 혹은 방사능유출시설의 점유자는 이 법 제27조부터 제30조,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그리고 제33조에 의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천의 잘못된 이용으로 손해를 입은 하천소유자나 하천이용자이다.¹⁰⁸⁾ 독일수자원법 제22조의 의미상 하천이란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의 물을 포함한 지표수(Grundwasser)를 말한다.

독일수자원법 제22조 제2항¹⁰⁹⁾에 따라 물질(Stoffe)을 생산, 가공, 저장, 보관, 장려, 처리하는 특정 시설의 소유자는 이러한 종류의 물질들이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고 하천에 버려지거나 유입되게 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동조는 시설책임(Anlagenhaftung)을 규정하고 있다. 물에 위대한 시설¹¹⁰⁾이나 물에 위대한 물질의 생산, 가공, 저장, 보관, 처리에 기여하는 시설 등이 문제이다.¹¹¹⁾ 물론 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변경을 위한 요건의 필요성은 독일수자원법 제22조 제2항의 법문에 반해 내부의 관련성과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의 내용과 목적에 기인해서 시설 책임에 유효하다.¹¹²⁾ 독일수자원법 제2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독일수자원법 제8조¹¹³⁾에 의해 ‘허가(Bewilligung)’가 있으면 면책된다. 위험책임은 위법성 존재여부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다.¹¹⁴⁾ 독일민법 제249조 이하에 의해 손해배상의 정도와 범위가 정해진다. 책임은 특정권리와 법익의 침해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로 귀착된다.¹¹⁵⁾ 확실하게 하천수 오염을 방지

107) BGHZ 103, 129, 134; Kloepfer, a. a. O., § 6 Rn. 137 f.

108) BGHZ 103, 129, 133.

109) 독일수자원법 제22조(물의 성질변경으로 인한 책임) 제2항 생산, 가공, 보관, 장려, 처리하는 특정 시설로부터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그 시설의 소유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항 2문은 준용된다. 손해가 초자연력에 의해서 발생되면 배상 의무가 없다.

110) 이러한 시설로는 공장, 쓰레기분류시설, 저장시설, 분료시설, 사료저장시설, 운반선, 화물차 등이 있다.

111) Oehmen, a. a. O., Rn. 329.

112) Gieseke/Wiedemann/Czychowski, a. a. O., § 22 Rn. 18.

113) 독일수자원법 제8조(허가) 제1항 허가는 하천을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허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목적물과 다른 사람의 점유 하에 있는 부동산과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114) Staudinger-Kohler, a. a. O., Einl. Rn. 95.

115) Gerlitz, Umwelthaftung und Unternehmerfreiheit, Frankfurt/M. 2002, S. 84.

조물책임법 제10조 제1항⁹⁸⁾에 의해 인적손해의 경우 피해자는 8500만 유로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IV. 수자원법

독일수자원법(Wasserhaushaltsgesetz: WHG)⁹⁹⁾ 제22조 제1항¹⁰⁰⁾ 제1문에 의하면 하천에 고체상태의 유형물을 버리거나 흐르는 액체나 기체상태의 이물질 유입시켜 하천물의 물리적¹⁰¹⁾, 화학적¹⁰²⁾, 생물학적 성질¹⁰³⁾을 오염시키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¹⁰⁴⁾ 수자원법상 행위책임(Handlungshaftung)이 문제된다. 규정상 제시된 하천의 변화가 고의로 목적 지향적으로 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단지 객관적으로 적합(objektive Eignung)한 행위로 충분한 것인지 논쟁이 되고 있다.¹⁰⁵⁾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¹⁰⁶⁾ 목적이 정해지고 하천으로 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우연한 손해발생 사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¹⁰⁷⁾ 청구권자는 통상적으로

97)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책임감경) 제1항 손해발생시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민법 제254조가 준용된다. 물건훼손의 경우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같다고 본다.

98) 독일제조물책임법 제10조(책임최고액) 제1항 인적손해가 제조물 혹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일한 제조물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의무자는 8500만 유로까지 책임이 있다.

99) BGBl 2002 1, S. 3245.

100) 독일수자원법 제22조(물의 성질변경으로 인한 책임) 제1항 수로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유입시키는 자나 물의 물리적,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성질을 변경시키는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수에 의해서 환경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공동연대책임을 진다.

101) 수온을 변화시킬 수 있다.

102) 물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103) 생명체의 배아가 오염되어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

104) 결국에 물이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흐름이 막히거나 고갈된다.

105) Gieseke/Wiedemann/Czychowski, WHG, 6. Aufl., München 1992, § 22 Rn. 7.

106) BGHZ 103, 129, 134.

법상 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 ProdHG)⁸⁸⁾을 적용해야 한다. 독일제조물책임법 제1조⁸⁹⁾에 의해 제조업자⁹⁰⁾는 결함있는 제조물(fehlerhaftes Produkt)을 거래하면 무과실(ohne Verschulden)이라도 환경위험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귀책된다.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해서 인간이 사망 또는 신체와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되면 제조물의 제조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조물의 개념은 독일제조물책임법 제2조⁹¹⁾에 규정되어 있다. 제조물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예상할 수 있는 안전성(Sicherheit)을 보장할 수 없을 때 독일제조물책임법 제3조⁹²⁾에 의해 결함을 갖게 된다. 설계(Konstruktions-), 제조(Fabrikations-), 지시상의 하자(Instruktionsfehler)가 문제된다. 거래되는 제조물이 결함있고 원치 않는 독극물이 제시되면 하자있는 제조물이 된다.⁹³⁾ 환경사법의 책임법상 수목보호제, 석면보유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조물, 방사능핵제조물, 토지와 물에 살포되는 살충제 등이 결함있는 제조물이 될 수 있다.⁹⁴⁾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거래하지 않는다면 독일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2항 제1호⁹⁵⁾에 의해 면책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염물질의 방출은 독일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⁹⁶⁾ 책임의 종류와 범위는 독일민법 제249조 이하에 의해서 보완된 독일제조물책임법 제6조⁹⁷⁾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제

88) 독일제조물책임법은 1989년 12월 15일 제정되었다. BGBl 1989 I, S. 2198.

89) 독일제조물책임법 제1조(책임) 제1항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간이 사망하거나 그의 신체와 건강이 침해를 입고 물건이 훼손되면 제조업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90) 독일제조물책임법 제4조 참조.

91) 독일제조물책임법 제2조(제조물) 이 법의 의미상 제조물은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의 부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동산과 전기이다.

92) 독일제조물책임법 제3조(결함) 제1항 제조물은 모든 사정의 고려 하에 특히 설명, 공정한 이용, 거래시점에 정당하게 예상될 수 있었던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할 때 결함이 있다.

93) BGHZ 105, 346. 특히 음식물이나 어류먹이 속의 방부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94) Schmidt-Salzer, a. a. O., Einl. Rn. 58; Staudinger-Kohler, a. a. O., Einl. Rn. 113.

95) 독일제조물책임법 제3조(결함) 제2항 제1호 제조업자의 책임은 제조물을 거래하지 않을 때 면책된다.

96) Staudinger-Kohler, a. a. O., Einl. Rn. 113.

제1항 제2문이 적용될 수 있다.⁸³⁾ 독일환경책임법상 위험책임에 대해 시설의 소유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양수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귀책된다면 책임은 비록 피해자가 과산이나 집행위험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분에 따라 귀책되게 된다.⁸⁴⁾

4. 정보제공청구권

시설에 의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는 법 제8조⁸⁵⁾, 제9조⁸⁶⁾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의 소유자와 관할청에 대해서 정보제공청구(Auskunftsansprüche)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 제10조⁸⁷⁾에 의해 손해배상의 범위의 화해의 범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때, 시설소유자는 피해자 혹은 다른 시설의 소유자로부터 자료나 법 제9조에 의해 관할청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III. 제조물책임법

환경작용이 시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위험제조물로부터 발생한다면 환경책임

손해를 가한 때는 각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인의 관여자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83) Hager, NJW 1991, 139 ff.

84) Schmidt-Salzer, UmweltHG, § 1 Rn. 242.

85) 독일환경책임법 제8조(시설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제1항 시설이 손해를 야기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는 한 피해자는 시설의 소유자로부터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86) 독일환경책임법 제9조(관할청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시설이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존재한다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는 한 피해자는 시설을 허가하고 감독하며 환경효과를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87) 독일환경책임법 제10조(시설소유자의 정보제공청구권) 제1항 이 법에 의해 시설소유자에 대해 청구가 유효하다면 피해자나 다른 소유자에 대한 화해청구에 대해 필요한 한에서 시설소유자는 피해자와 다른 시설소유자로부터 정보제공, 자료열람보장 혹은 동법 제9조에 제시된 관할청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그 손해가 환경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적 손해의 경우 1억 6천만 마르크, 물적 손해의 경우 8500만 유로로 제한했다. 피해자는 법 제18조⁷⁴⁾에 의해 다른 환경책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그 이상의 액수를 상응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독일환경책임법 부록 2에 첨부된 특정 위험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19조⁷⁵⁾에 의해서 시설운영자가 큰 환경침해에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배상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다수의 시설운영자가 다수의 시설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해에 귀책되는 사례의 규정은 독일환경책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⁷⁶⁾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을 침해하는 시설의 소유자인 가해자로서 통일되게 공동채무자로서 귀책된다.⁷⁷⁾ 이 견해는 피해자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 공동으로 유발되는 몫에 상응하는 책임만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⁷⁸⁾ 그러나 인과관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다수의 시설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확인되었으나 어떤 시설이 사실상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불분명하면 위험책임에 적용되는 독일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호⁷⁹⁾에 의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동연대책임(gesamtschuldnerische Haftung)을 물을 수 있다.⁸⁰⁾ 한편 중첩적 인과관계(kumulative Kausalität)가 있는 경우에 위험공동체 내에서 공동연대책임이 고려될 수 있다.⁸¹⁾ 시설이 부가적이거나 잠재적 혹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에 영향을 끼치고 각 참가자들의 행위가 손해를 야기시키는 데 적절하다면 독일민법 제830조⁸²⁾

존재하는 한 사망, 신체, 건강침해 인적피해에 총 1억 6천만마르크까지, 물건의 훼손에는 8500만 유로까지만 귀책된다. 일체의 환경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제1문의 제시된 최고액을 초과하면 개별손해는 총액이 최고액 내로 경감된다.

74) 독일환경책임법 제18조(계속되는 책임) 제1항 다른 규정에 따른 책임은 존재한다.

75) 독일환경책임법 제19조(보상예방) 제1항 부록 2에 규정된 시설의 소유자는 그가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작용으로 인해 인간이 사망하거나 그 신체와 건강이 침해를 입고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76) Vgl. BT-Ds 11/7104, S. 28.

77) Salje, UmweltHG, München 1993, § § 1, 3 Rn. 130.

78) Schmidt-Salzer, UmweltHG, § 1 Rn. 258.

79) Hager, NJW 1991, 134 ff.; Wagner, NuR 1992, 206.

80) BGHZ 101, 106; Deutsch, JZ 1991, 1102; Hager, NJW 1991, 139.

81) Kloepfer, a. a. O., § 6 Rn. 32.

82) 독일민법 제830조(공동행위자와 관여자) 제1항 수인이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로 하나의

수 있다는 것은 환경법측면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피해자는 독일민법 제252조⁶⁷⁾의 일실이익(entgegengangenen Gewinn)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독일민법 제253조⁶⁸⁾에 의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공동과실은 법 제11조와 독일민법 제254조⁶⁹⁾에 따른다. 피해자는 독일민법 제254조 제2항 제1문에 의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원상회복과 독일민법 제251조 제2항⁷⁰⁾의 원칙은 자연상태로의 원상회복의 많은 사례에 반한다. 자연이 침해되는 경우 법 제16조⁷¹⁾에 의해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독자적으로 독일민법 제251조 제2항 제1문에 의해 적절하게(verhältnismäßig) 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자는 환경침해로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 동식물들을 다시 서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die erforderlichen Aufwendungen)을 청구할 수 있다.⁷²⁾ 법 제15조⁷³⁾는 시설운영자의 책임을 예견가능하게 하기 위

67) 독일민법 제252조(일실이익) 배상되어야 할 손해에는 일실이익도 포함된다. 사물의 통상적 경과에 비추어 또는 특별한 사정, 특히 행하여진 시설이나 준비조치에 비추어 개연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이익은 일실된 것으로 본다.

68) 독일민법 제253조(비재산손해) 제1항 재산손해가 아닌 손해는 법률로 정하여진 경우에만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신체, 건강,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침해로 인해 손해 배상이 될 수 있다면 재산상 손해가 아닌 손해로 인한 적절한 배상이 금전으로 청구되어 질 수 있다.

69) 독일민법 제254조(공동과책) 제1항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책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와 배상범위는 제반사정에 따라 특히 어느 당사자가 어떠한 범위에서 주로 손해를 야기하는가에 따라 정하여 진다. 제2항 피해자의 과책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알지 못하고 또한 알아야 했던 것이 아닌 높은 손해위험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 또는 피해자가 손해를 회피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8조는 이에 준용된다.

70) 독일민법 제251조(즉시 금전배상) 제2항 원상회복이 과도한 비용지출에 의해 가능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피해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

71) 독일환경책임법 제16조(원상회복조치비용) 제1항 물건의 훼손 및 자연과 경관의 침해가 있으면 피해자가 침해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한, 독일민법 제251조 제2항은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그 물건의 가치를 초과함으로써 부적절하게 되지 않는 정도로 적용될 수 있다. 제2항 가해자는 필요한 비용을 위해 배상청구자의 청구에 이행해야 한다.

72) Oehmen, a. a. O., Rn. 296 ff.

73) 독일환경책임법 제15조(책임최고액한계) 배상의무자는 손해가 일체의 환경작용에 의해서

제3자의 부양의무가 있었다면 가해자는 법 제12조 제2항⁶¹⁾에 따라 사망자가 추정되는 기간동안 부양을 보장하는 한에서 부양의무를 인수해야 한다. 가해자는 법 제14조 제1항⁶²⁾에 의해 연금(Geldrente)을 지불할 수 있다.

인체의 상해, 건강침해의 경우 가해자는 법 제13조⁶³⁾ 제1문에 의해 치료비와 노동상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노동능력상실의 경우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장래를 위해서 연금(Geldrente)으로 지불될 수 있다. 피해자는 법 제14조 제2항⁶⁴⁾과 민법 제843조 제3항⁶⁵⁾에 의해 정기금인 연금대신에 금전배상(Kapitalabfindung)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민법 제249조⁶⁶⁾ 이하의 규정은 물적 손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자는 원상회복(Naturalrestitution)해야 한다. 물론 피해자는 민법 제249조 제2항 제1문에 의해 원상회복 대신에 그것에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실상 환경침해를 제거함이 없이 예상되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는 매장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61) 독일환경책임법 제12조(사망시 손해배상범위) 제2항 사망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제3자와 법으로 부양의무가 있거나 있어서 그의 사망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부양청구권이 이전되면 배상의무자는 제3자에게 사망자가 추정되는 생존하는 기간동안 부양의무가 있는 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62) 독일환경책임법 제14조(연금에 의한 손해배상) 제1항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중지되거나 감소되면서 그 필요성의 증가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에게 보장될 tnb 있는 손해배상은 장래에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63) 독일환경책임법 제13조(신체상해의 경우 배상의 범위) 신체와 건강이 침해되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그러한 침해로 인해 일시적, 계속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거나 혹은 그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가 배상되어야 한다. 재산상의 피해가 아닌 손해도 적절한 배상이 금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 64) 독일환경책임법 제14조(연금에 의한 손해배상) 제2항 민법 제84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준용된다.
- 65) 독일민법 제843조(정기금배상과 일시금배상) 제3항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피해자는 정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66) 독일민법 제249조(손해배상의 범위와 종류) 제1항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는 배상의무를 발생시킬 사정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2항 인적 피해나 물건의 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채권자는 원상회복 대신에 필요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훼손시에 제1문의 필요한 금전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징수되거나 되는 한에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을 지는 자이다.⁵¹⁾ 시설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는 법익침해에 의해서 발생되어야 한다. 시설의 정상운영 혹은 장애여부는 중요하지 않다.⁵²⁾ 책임은 인적, 물적 손해로 제시될 수 있으나 재산손해(Vermögensschäden)는 제시되지 않는다. 환경작용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증적으로 누적되는 손해(Allmählichkeitsschäden)는 오염원으로부터 격리되어 발생하는 손해(Distanz- und Summationsschäden)와 같이 파악된다.⁵³⁾ 개별적인 권리의 침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환경손해(Ökoschäden)는 독일환경책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⁵⁴⁾ 그러므로 자연과 경관의 침해 즉 삼림의 훼손과 기후변화 그리고 동식물의 멸종은 포함되지 않는다.⁵⁵⁾ 시설운영자가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할 것인지 법 제11조⁵⁶⁾에 규정되어 있다. 인간이 시설에 의한 환경작용으로 사망한다면 법 제12조 제1항 제1문⁵⁷⁾에 의해서 그동안의 치료비와 인간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그의 상속인은 법 제12조 제1항 제2문⁵⁸⁾에 의해서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들은 독일민법 제843조⁵⁹⁾, 제844조⁶⁰⁾ 등이다. 사망자가 침해 당시에

51) BGHZ 76, 35, 39; 80, 1, 4.

52) Hoppe/Beckmann/Kauch, a. a. O., § 12 Rn. 92; Kloepfer, a. a. O., § 6 Rn. 74; Marburger AcP 192(1992), 18.

53) Kloepfer, a. a. O., § 6 Rn. 77; Hoppe/Beckmann/Kauch, a. a. O., § 12 Rn. 94.

54) Staudinger-Kohler, UmweltFHG, Einl. Rn. 127.

55) Wolf, Umweltrecht, München 2002, S. 111.

56) 독일환경책임법 제11조(공동책임) 손해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독일민법 제254조에 의한다. 물질적 손해가 있는 경우 물건의 사실상 지배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등하다.

57) 독일환경책임법 제12조(사망시 손해배상범위) 제1항 제1문 인간이 사망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중지되거나 감소되면서 그 필요성의 증가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58) 독일환경책임법 제12조(사망시 손해배상범위) 제1항 제2문 또한 손해를 배상하는 자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장례비를 배상해야 한다.

59) 독일민법 제843조(정기금배상과 일시금배상) 제1항 신체 또는 건강침해로 인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소멸하거나 감소된 때 또는 그 수요가 증대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기금 지급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0) 독일민법 제844조(사망의 경우 제3자의 배상청구권) 제1항 사망의 경우에는 배상의무자

로 면책된다. 손해가 초자연력(höhere Gewalt)에 의해서 발생되면 법 제4조에 의해 어떤 배상의무도 없다. 초자연력은 외부에서 자연력이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안목과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고 경제적이나 이성적으로 예견 가능한 주의(Sorgfalt)를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시설운영과 무관한 사건에 의해 시설을 침해했을 때 존재한다.⁴⁷⁾ 초자연력은 눈사태, 번개, 태풍, 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다.⁴⁸⁾ 한편 시설이 규정에 따른 정상적 운영으로 물건이 단지 비본질적(unwesentlich)이거나 어떤 장소적 관계에 의해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다소 침해되었을 경우, 법 제5조에 의한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배제된다.⁴⁹⁾ 결국 적은 손해(Bagatellschäden)는 포함되지 않는다. 침해가 장소적 관계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침해의 정도와 종류가 주어진 장소적 여건 하에서 특히 그 장소의 특성에 따라 수인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적합성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sen)으로 검증해야 한다.⁵⁰⁾ 물건의 비본질적 침해 여부를 판단은 평균이용자의 감정(Empfinden eines Durchschnittsbenutzers)에 의한다.

3. 책임의 범위

시설소유자는 시설로부터 야기된 물적, 인적 손해에 귀책된다. 시설소유자란 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Verfügungsgewalt)을 갖고 규정에 따른 운영책

6조 제2항 제2문)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손해가 단지 비본질적 혹은 장소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 배제된다.

46) 독일환경책임법 제2조(운영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책임) 제1항 환경침해가 미완성시설이나 시설의 위험이 그 완성에 기인한 사정에 의한다면 미완성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1조에 의해 귀책된다.

47) BGHZ 7, 338 f.; BGHZ 62, 351, 354.

48) BT-Ds 11/7104.

49) 독일민법 제906조 제2항 제2문 소유자가 방해를 수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방해가 그 토지에 대한 그 지역에 통상인 이용 또는 토지의 수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방해한 때에는 그 다른 토지 이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0) Schmidt-Salzer, UmweltHG, § 5 Rn. 28.

하고 있다. 다른 견해로는 동조가 과실책임(verschuldensabhängige Haftung)에 따르는 시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³⁶⁾ 법이 제6조 제1항의 추정을 제1조 부록의 일련의 시설(Kataloganlagen)에 관련된 이후에만 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배제가 단지 일련의 시설과 관련될 수 있다.³⁷⁾ 법 제7조 제2항의 의미상 선택의 원인(Alternativursachen)으로서 문제시설과 무관하게 손해를 유발시키는 자연적 환경작용(natürliche Einwirkungen)³⁸⁾을 고려할 수 있다.³⁹⁾ 게다가 손해원인(Schadensverursachung)에 적합한 다수의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손해를 발생시킬 ‘다른 사정(anderer Umstand)’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법 제6조 제1항의 원인추정은 효력이 없다.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시설에 의한 구체적 적합성이 확인될 때, 시설소유자는 다른 시설에 대한 비난으로 면책될 수 없다. 추정은 다른 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손해를 야기했었을 때만 배제해야 한다.⁴⁰⁾ 법 제6조 제1항의 추정은 제3의 원인(Drittursache)이 있을 때만 배제된다.⁴¹⁾ 다른 사정으로서 제3자의 행위와, 자연발전과정(natürliche Vorgänge)이 고려된다.⁴²⁾ 해당 시설소유자는 독일환경책임법 하에 적용되지 않는 시설오염의 원인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⁴³⁾

2. 면책

법 제4조⁴⁴⁾와 제5조⁴⁵⁾에 의해 법 제1조와 제2조⁴⁶⁾에 따른 책임은 특정 사례

36) Kloepfer, a. a. O., § 6 Rn. 100.

37) Kloepfer, a. a. O., § 6 Rn. 100.

38) 예를 들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자(Allergieauslöser)로서 꽃가루(Pollen)를 들 수 있다.

39) Marburger AcP 192(1992), 25; Staudinger-Kohler, a. a. O., § 7 Rn. 14.

40) Marburger AcP 192(1992), 26.

41) Schmidt-Salzer, VersR 1991, 13.

42) Kloepfer, a. a. O., § 6 Rn. 101; Schmidt-Salzer, UmweltHG, § 7 Rn. 72; Hager, NJW 1991, 139.

43) Hager, NJW 1991, 139.

44) 독일환경책임법 제4조(면책) 초자연력에 의해 손해가 발생될 때 배상의무는 없다.

45)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물질적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시설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면(제

제1항의 인과관계추정(Ursachenvermutung)이 배제된다. 입증책임은 시설소유자에게 있다. 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의해 시설이 규정에 따라 운영될 때 법 제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른 운영(bestimmungsgemäßer Betrieb)이라 함은 특정운영의무가 유지되면서 운영상 어떤 장애도 없을 때이다.³⁰⁾ 특정운영의무는 법 제6조 제3항³¹⁾에 의해 행정법상의 허가, 부담, 강제집행명령과 법규에 제시된 것들이다. 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6조 제1항의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연방임및시온보호법 제12조의 부담(Auflagen)과 법 제17조에 의한 사후집행명령(aus vollziehbaren nachträglichen Anordnungen)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의무의 유지(Einhaltung der Betriebspflichten)는 법 제6조 제4항³²⁾에 의해 추정된다.

한편 법 제7조 제2항³³⁾에 의해 법 제6조 제1항의 추정은 손해를 독자적으로 야기하는 또 다른 사정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 제1조로부터 포함되지 않는 시설의 생활방해(Immissionen)가 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의미상 ‘다른 사정(anderer Umstand)’이 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이다. 일부 학자³⁴⁾들은 법 제7조가 다른 시설에 대하여 다수시설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³⁵⁾ 법 제6조 제1항의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련의 시설의 소유자가 ‘다른 사정(anderer Umstand)’으로서 법 제1조의 부록 1에 첨부되지 않는 시설의 오염방출(Emissionen)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

해 판단된다.

30) ‘장애(Störfall)’의 정의는 § 2 I der 12. BImSchV.

31)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원인추정) 제3항 특별한 운영의무는 행정법상 허가, 부담 그리고 집행명령과 법규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생략).

32)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원인추정) 제4항 이러한 허가과 부담, 집행명령 혹은 법규 속에서 특별운영의무에 따른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운영의무의 유지는 추정된다. (생략).

33) 독일환경책임법 제7조 제2항 한 시설만이 손해발생에 적합하다면 다른 사정이 개별사안의 여건에 따라 적합할 때 추정되지 않는다.

34) Salje, a. a. O., § 7 Rn. 9; Hoppe/Beckmann/Kauch, a. a. O., § 12 Rn. 107.

35) Staudinger-Kohler, a. a. O., § 7 Rn. 14. 하천의 오염이 가정에서 방출되는 오물이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면, 발전소운영자는 가정에서 방출되는 오물을 다른 사정(anderer Umstand)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Ursachenvermutung)과 입증완화(Beweiserleichterung)를 규정하고 있다. 시설이 손해를 유발했을 때, 법 제6조 제1항²²⁾에 의해 이 시설에 의한 손해발생이 추정되므로 항변(widerlegbar)할 수 있다. 비록 법 제6조 제1항이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추정규정은 책임근거적 인과관계(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²³⁾와 더불어 책임충족적 인과관계(haftungsausfüllende Kausalität)에 관련되어 있다.²⁴⁾ 손해의 범위는 독일민사소송법 제287조 제1항²⁵⁾에 의해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의 완화는 환경작용(Umwelteinwirkung)과 손해(Schaden) 사이의 인과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²⁶⁾ 그로부터 입증의 완화는 시설과 법익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책임근거적 인과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피해자는 문제의 시설이 특정 손해유발물질을 발생시키는 데 적합하고, 이 물질은 단지 추상적이 아니라 사실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 개별사실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²⁷⁾ 개별사례 속에서 그 적합성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법 제6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손해를 증명한 시설에 의해서 환경침해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환경작용에 의해서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추정된다. 법 제6조 제2항²⁸⁾과 제7조²⁹⁾에 규정된 특정 사안은 법 제6조

22)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원인추정) 제1항 운영시설이 발생된 손해를 야기시키는 개별사례에 적합하다면 손해는 이 시설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생략).

23) Kloepfer, Umweltrecht, § 6 Rn. 91.

24) Deutsch, JZ 1991, 1100.

25) 독일민사소송법 제287조(손해조사; 채권의 최고액수) 제1항 당사자간에 손해준재여부와 그 정도 그리고 대체이익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한다. 신청된 증거수집 혹은 공무상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행해 질 것인지 행해진다면 어느 정도 행해질 것인지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법원은 그 손해와 이익을 심문할 수 있다. 제452조 제1항 제1문, 제2문부터 제4문까지 규정이 준용된다(2005년 12월 5일 개정).

26) Kloepfer, a. a. O., § 6 Rn. 91.

27) Schmidt-Salzer, a. a. O., § 6 Rn. 54 ff.; Kloepfer, a. a. O., § 6 Rn. 81.

28) 독일환경책임법 제6조(원인추정) 제2항 시설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면 제1항을 적용되지 않는다. (생략).

29) 제7조(추정의 배제) 제1항 손해가 다수의 시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 개별사안의 여건에 따라 다른 사정이 손해발생에 적합할 때 추정되지 않는다. 개별사안의 적합성은 손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손해의 상태와 개별사안의 손해발생에 기여하는 모든 기타의 여건에 의

관련된 시설물의 부속건물이다. 생산되고 원자재가 보관되는 대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은 공장(Betriebsstätte)에 속하나, 동법상의 시설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행정과 관련된 관리동 건물(Verwaltungsgebäude)은 제외된다.¹⁹⁾ 한편 법 제2조²⁰⁾에 의하면 책임의 대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 동조에 따르면 이 시설의 완성 또는 사업개시로 위험(Gefährlichkeit)이 발생되거나 환경효과가 유발될 수 있을 때 그 책임은 비록 미완성이거나 외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가동되지 않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에게 귀책될 수 있다. 결국 책임은 미완성시설의 소유자이거나 사업개시시점에 소유자였던 자에게 귀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손해(Umweltschaden)가 제3자의 침해로 인해 발생했을 때도 귀책된다.²¹⁾

(4) 인과관계

시설과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침해효과 그리고 그 환경침해효과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익침해, 즉 인간의 사망, 신체와 건강침해 혹은 재산피해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근거적 인과관계(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는 상당인과관계설과 규범의 보호목적설에 의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많은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은 제6조에 원인추정

동차, 기술적인 건축물 b) 공간적으로나 운영기술적으로 그 시설이나 시설부분에 부설되어 있거나 환경작용에 중요한 부속건물.

19) Oehmen, Umwelthaftung, Rdnr. 214. 화학물을 다루는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행정건물이 소실되면서 이웃건물을 그을음으로 오염시켰다면 이러한 건물에 대한 피해는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독일환경책임법 제2조(운영되지 않는 시설로 인한 책임) 제1항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설의 환경작용에 의하거나 그 시설의 완공으로 시설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미완성시설의 소유자는 제1조에 의해 귀책된다. 제2항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의 환경작용과 시설위험으로 조업중지상태에 있다면 제1조에 의해 운영중지시에 시설의 소유자였던 자가 책임을 진다.

21) Schmidt-Salzer, a., a. O., § 2 Rn. 22.

(1) 법익침해

법 제1조에 의해 귀책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침해와 인간의 신체와 건강침해 그리고 물건의 훼손과 같은 법익침해가 성립요건이다. 순수한 재산피해는 책임으로부터 배제된다.¹³⁾ 또한 환경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 어떤 개별적인 것에 속하지 않는 자연재는 법 제1조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¹⁴⁾

(2) 환경작용

법익침해는 환경작용에 의해서 발생된다. 환경작용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손해는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을 야기하는 환경작용에 의해서 발생된다. 여기서 '기타 현상'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작용의 객체가 자연적인 형태로 변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자연과정(physische Vorgänge)이다.¹⁵⁾ 그러나 이 규정은 책임근거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¹⁶⁾

(3) 시설

법 제1조에 의한 책임은 특별히 법 제1조의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는 특정시설(bestimmte Anlagen)의 환경침해와 관련되어 있다. 동법상의 시설은 법 제3조 제2항¹⁷⁾에 의해 공장과 창고와 같은 일정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Einrichtung)과 법 제3조 제3항¹⁸⁾에 의한 기계, 설비, 자동차, 기술적인 시설물과 운영기술과

13) Balensiefen, Umwelthaftung, S. 229.

14) Kloepfer, NuR 1990, 348.

15) Salje, UmweltHG, München 1993, § § 1, 3 Rn. 70; 환경시설의 운영은 자연광선의 침해로 인하여 경작지상의 식물의 성장을 감소시키는 매연과 먼지를 발생시킨다.

16) Marburger AcP 192(1999), 18; Kloepfer, Umweltrecht, § 6 Rn. 71; Hoppe/Beckmann/Kauch, Umweltrecht, § 12 Rn. 88.

17)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 제2항 시설은 공장, 창고와 같은 정착된 건물이다.

18)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 제3항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시설에 속한다. a) 기계, 설비, 자

하고 있다. 제조물에 의한 침해는 그 속에서 산업생산과정의 위험과 동시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귀책된다. 한편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는 동법 제3조¹⁰⁾ 제1항의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을 야기하는 환경작용을 요구한다. 동시에 입법자는 책임의 근거로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II. 독일환경책임법

러시아 체르노빌(Tschernobyl)의 원자로의 불행과 스위스회사 산도즈(Sandoz)의 물류창고의 화재로 인한 라인강유역의 오염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 환경오염을 배제하자는 동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독일환경책임법(이하 독일환경책임법은 ‘법’이라 한다)은 특정한 환경위험 시설의 소유자에게 오염에 대한 유책성을 배제한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원자력법(AtomG)과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1990년 12월 10일 독일환경책임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된 핵사건 등의 환경오염피해에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위험책임은 법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적용된다.¹¹⁾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환경책임은 다른 규정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다른 환경책임법 규정과 더불어 효력이 있다.¹²⁾

1.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의 성립요건

법 제1조에 의하면 손해를 야기하는 시설에 의한 환경작용(Umwelteinwirkung)을 통한 법익침해(Verletzung eines Rechtsguts)가 성립요건이다.

10) 독일환경책임법 제3조(개념규정) 제1항 손해는 물질, 진동, 소음, 압력, 광선, 가스, 증기, 열 혹은 토양, 공기, 물에 확산된 기타 현상을 야기하는 환경작용에 의해 존재한다.

11) BT-Ds 11/7104, S. 14.

12) Schmidt-Salzer, UmweltHG, Einf. Rn. 57.

인한 위험책임³⁾을 묻고, 연방입맛시온보호법(Bundesimmissionschutzgesetz)은 오히려 불법행위책임과 희생보상책임을 묻는다.⁴⁾ 무과실책임의 원인은 특별한 위험원의 생성⁵⁾에 의하므로, 시설운영활동에 따른 손해를 무과실책임에 의한 위험책임으로 귀책시키고 있다.⁶⁾ 이미 독일에서는 100년 전부터 위험책임을 책임의 근거로써 인정해 왔다. 결과책임에 따른 시설소유자의 책임은 위험의 지배(Beherrschung des Risikos), 손해부담의 정도, 위험으로부터 수익, 그가 수인할 수 있는 위험물과 시설운영의 조건성에 의한다.⁷⁾ 요컨대 면책이 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에 따른 면책사유를 들어 증명해야 한다. 운영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책임은 환경침해가 시설의 위험성에 기인하거나 기인하였던 사정에 의한다. 위험책임론에 의해 법에 의한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계속해서 책임영역 내에 두자는 것은 전적으로 결과론적 발상이다.

환경책임은 전형적인 위험책임으로서 환경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될 수 있다. 독일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UmweltHG)⁸⁾ 제1조⁹⁾의 목적물의 침해와 손해는 환경위험의 귀책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독일환경책임법은 확산되는 위험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규정

3) Larenz, VersR 1963, 599 ff.; Baur, JZ 1964, 354 f.

4) 환경책임의 귀책에 대해서 vgl. Deutsch, Haftungsrecht I, 1976, 31.

5)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42, 15=Gesammelte Schriften, Band III, 1983, 239, 249; Kötz/Wagner, Deliktsrecht, 9. Auflage, 2001, Rdnr. 341.

6) Enneccerus/Lehmann, Schuldrecht, § 230 II; Larenz, Schuldrecht II, § 77 I; Oftinger, Schweizerisches HaftpflichtR I, 16 f.; Schäfer/Ott, Lehrbuch des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 Auflage, 1995, 171 f.

7) Mataya, Das Recht des Schadensersatzes vom Standpunkt der Nationalökonomie, 1988; Bienenfeld, Die Haftung ohne Verschulden, 1933, 29 ff.; Larenz, JuS 1965, 374; M. Rümelin, Schadensersatz ohne Verschulden, 1910, 30, 46; v.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1971, 15; Esser, Grundlage und Entwicklung der Gefährdungshaftung, 1969, VI.

8) 1990년 12월 10일 출간자료: BGBl 1990 I, S. 2634.

9) 독일환경책임법 제1조(환경작용으로 인한 시설책임) 부록1에 제시된 시설의 환경작용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와 건강이 침해되고 물건이 손상되면 시설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독일의 환경사법상 위험책임

이 승 우*

차 례

- I. 머리말
- II. 독일환경책임법
- III. 제조물책임법
- IV. 수자원법
- V. 기타 관련법상 위험책임
- VI. 맺음말

I. 머리말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은 채무이행시 완전하게 지배할 수 없는 특별한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에 있어서 위법성과 유책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다.¹⁾ 환경사법에서 위험책임의 성립요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위험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²⁾ 위험책임은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유형 중의 하나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귀책된다. 즉, 위험물 관리자에게 절대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독일수자원법은 수자원의 성질 변경으로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 Enneccerus/Nipperdey, Allgemeiner Teil, § 217 I; RGZ 141, 407; Deutsch, Karlsruher Forum 1967, 4.

2) Staudinger-Kohler, UmweltHG, Einl. Rn. 94.